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무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단회의) 본 회의 회무를 협의 검토하기 위하여 연 6회 이상 회장단회의를 개최한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3조(회원의 입회) 회원(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제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금과 연회비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입회 승낙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변경)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회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2025.6.13.개정, 2025.9.1시행>

입회금	70,000원
정회원회비	90,000원
준회원회비	30,000원
논문회원회비	100,000원
특별회원회비	1,000,000~3,000,000원
도서관회원회비	450,000원

종신회비 :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한다.

단, 1. 논문회원 회비는 정회원 회비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도서관회원 회비는 특별회원 회비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논문회원회비는 1986.1.14, 도서관회원 회비는 1988.1.1부터 각각 실시한다.

4. 군복무, 해외 유학 및 장기체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회원은 휴식 회원이라 하여 그 기간동안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준회원 중 대학 3~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입회비 및 그 기간동안의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의2(학생회원) 정관 제6조의 회원 이외에 별도로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학생회원의 자격은 건축관련학과 학부 1, 2년생이며, 가입비 및 회비는 무료로 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8조(회무분장) 부회장은 총무, 연구1, 연구2, 연구3, 지회, 건축학, 사업, 교육, 미래전략, 대외협력, 자산관리 등의 회무를 분장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9조(총무부) 총무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2. 관인의 간수 및 관리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 정관, 규정, 내규,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자산, 통상자산 및 기타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관공서 기업체 및 타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입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제명, 자동제명에 관한 사항
9. 각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10. 상훈에 관한 사항
11. 총무부 소속 위원회 운영 및 타부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12.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연구1부) 연구1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집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3. 학술발표대회논문집의 발행 및 학술발표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건축교류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5. 각종 전시에 관한 사항
6. 연구1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2부) 연구2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건축분야 중 건축환경, 에너지설비, 구조, 재료, 시공에 관한 연구
3. 연구2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연구3부) 연구3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건축정책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의적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연구3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지회부) 지회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회장회의 및 지회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지회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축학) 건축학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건축분야 중 계획, 설계, 역사, 도시및단지에 관한 연구
3. 건축학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사업부) 사업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회원간의 친목증진에 관한 사항
2. 견학, 시찰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부) 교육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건축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3. 전반적 건축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미래전략부) 미래전략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미래건축 발전에 관한 사항
2. 핵심전략사업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축산업 혁신, 첨단화에 관한 사항
4. 미래전략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대외협력부) 대외협력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공공봉사에 관한 사항
3. 홍보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자산관리부) 자산관리 담당부회장과 담당이사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학회자산관리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학회 및 건축 관련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
3. 자산관리부 소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본 회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1. 총무부
 - 가. 학회상선정위원회
 - 나. 윤리위원회
 - 다. 학회제도및정관개정위원회
 - 라. 선거관리위원회
 - 마. 건축발전위원회
 - 바. 상훈위원회
 - 사. 학생위원회
 - 아. 여성위원회
 - 자. 공동재정위원회
2. 연구1부
 - 가. 회지편집위원회
 - 나. 논문편집위원회
 - 다. 영어논문편집위원회
 - 라. 학술발표대회위원회
 - 마. 건축대전위원회
 - 바. 아시아건축저널(JAABE)위원회
 - 사.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ISAIA)위원회
3. 연구2부
 - 가. 건축환경위원회
 - 나. 건축설비에너지위원회
 - 다. 건축음향위원회
 - 라. 강구조위원회
 - 마. 철근콘크리트구조위원회

바. 내진구조위원회

사. 내풍구조위원회

아. 건축시공위원회

자. 건축재료위원회

차. 건설관리위원회

4. 연구3부

가. 건축정책위원회

나. 초고층·도시건축위원회

다. 방재재난대응위원회

라. 모듈러공업화건축위원회

마. 장수명리모델링건축위원회

바. 도시재생위원회

사. 전력시설건축위원회

5. 지회부

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나. 해양건축위원회

다. 지역전통건축및문화유산위원회

라. 지구환경위원회

마. 공원도시재건위원회

6. 건축학부

가. 건축계획위원회

나. 건축설계위원회

다. 건축역사이론위원회

라. 도시및단지위원회

마. 목조건축위원회

7. 사업부

가. 건축의날위원회

나. 견학답사위원회

다. 국제위원회

라. 건축공모관리위원회

8. 교육부

가. 교육제도위원회

나. 교육시설위원회

다. 건축교육위원회

9. 미래전략부

가. 건축생산시스템(OSC)위원회

나. 뉴노멀미래세대위원회

다. 스마트건축위원회

라. 통일건축산업위원회

마. 건축혁신성장위원회

바. 인공지능(AI)건축설계위원회

사. 친수리질리언스위원회

10. 대외협력부

가. 홍보위원회

나. 산관학협동위원회

다. 대정부협력위원회

11. 자산관리부

가. 학회자산관리위원회

나. 계약분쟁위원회

다. 융합리모델링위원회

제21조(특별위원회) 본 회는 제20조에 규정된 위원회 외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부설기관) 부설기관은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1. 건축연구소

2. 미래비전기획원

가. 아키플릭스

나. 정보출판센터

다. 건축학술아카이브센터

3. 교육원

가. 건축리더십아카데미(AAL)위원회

나. 건축창의러닝(AEL)위원회

4. 건축기준원

가. 건축기준센터

나. 건축규정센터

5. 건축교육혁신원

가. 건축학교육위원회

나. 건축공학교육위원회

다. 전문대학교육위원회

라.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마. 대학원교육위원회

바. 건축사자격시험제도개선위원회

6. 탄소중립건축원

가. 탄소중립인증총괄센터

나. 내재탄소센터

다. 운영탄소센터

제23조(위원회의 내부조직) 각 위원회는 다음의 내부조직을 갖는다.

1. 위원장 :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위원 : 각 위원회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분과위원장 :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진다.

5. 분과위원 :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의 책임하에 간사 및 분과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2부 및 연구3부 소속 분과위원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추
가할 수 있다.

6. 위원회 워킹그룹(WG) : 위원회 내에 워킹그룹을 둘 수 있다. 각 워킹그룹은 당면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위원장이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구성하며, 당
해업무가 끝나면 각 위원회의 동 사안에 대한 역할은 종료된다.

제24조(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규정은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사무국)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총장은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
한다.

제4장 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별도로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79년 12월 1일부터 실행한다.
2. 이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2년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5년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86년 1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86년 5월 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87년 6월 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88년 5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0년 7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1992년 9월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1994년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199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0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규정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39.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0.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2. 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3.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5. 이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8.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9. 2025년 6월 13일에 개정된 운영규정 제7조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